



제 목 | 아파트 건설현장 갱풀 수직보호망 문의

아파트 건설현장에 근무중인데 동절기공사를 위해 갱풀 외부에 보양막을 설치코자합니다. 갱풀 외부 수직보호망을 설치 후 보양막을 설치하여야 정상적인 절차로 알고있는데 외부 수직보호망을 설치하지않고 보양막(일반천막)만 설치작업 후 동절기가 끝나고 수직보호망을 설치하면 안전상 결격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꼭 수직보호망 설치 후 작업해야 되나요? 층수는 약 5~6층 정도 예상됩니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56조 규정에 의거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때에는 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의 갱풀에 설치하는 수직보호망은 작업 중 자재 등의 낙하, 비래 등에 의한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동보호망은 법상 기준에 적합한 수직보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제 목 | 영세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특례

산재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 영세사업주의 경우에도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혜택을 볼 수 있는지요?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을 사용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주에 대하여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로 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세사업주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관련

사업장 형태는 건설현장이고 사업기간은 2008년~2009년 2월 종료되었습니다. 안전관리자는 2009년 1월 안전관리자 변경선임 후 2009년 2월 공사 종료로 사업장이 폐쇄되었습니다.(1개월 안전관리자 역무 수행) 이때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사업 종료로 역무 종결 후 해임되었는데, 안전관리자 직무교육 실시 예정 통보 일정을 보니 2009년 03월 16일 부터로 되어 있었습니다.(산업안전보건교육원 배포자료) 이와 같이 사업장 종료로 해임된 안전관리자가 직무교육을 참석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 별도질의 : 2007년 또는 2008년 안전관리자의 역무를 수행한 적(사업장 종료로 해임)이 있는 안전관리자가, 2009년 1월 1일 이후 신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 역무를 수행할 경우 신규교육 대상인지 아니면 보수교육 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귀하의 질의의 경우 안전관리자 및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직무교육 대상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종사자)은 '09.1.1이후 신규로 선임된 관리책임자 등에 대해 신규교육 이수가 필요하며, '09.1.1 이전의 선임된 관리책임자 등에 대해서는 신규교육이 적용되지 않으며, '10.12.31이전 3월 및 이후 3월이내에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장 종료로 해임된 안전관리자가 직무교육을 참석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2008년 ~ 2009년 2월, 2009년 1월 안전관리자 변경선임) 원칙적으로 안전관리자 신규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직무교육을 이수('09년 3월 교육실시 예정)하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향후 행정지도가 예상되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 산업안전과의 추가적인 상담(유선 또는 방문)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별도질의답변 : 안전관리자 신규교육을 이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 목 | 의료보호대상자의 산재 신청

의료보호 1종 대상자가 산재 요양신청을 한 경우 불이익이 없는지요?

 의료보호제도는 국민건강보험료의 납부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발생하는 모든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병원이용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국가 재정으로 부담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반면에 산재보험제도는 국가가 평소에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여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를 당하였을 때에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서, 의료보호제도와는 그 지급범위, 재원부담의 주체 등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의료보호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산재보험을 적용하여,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뿐만 아니라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치유 후 노동력 상실에 따른 장해급여 등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 혜택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여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제 목 | 건설업(150억 미만) 안전관리자 선임의 건

3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미만의 건설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18조에 의해 안전보건총괄책임자만 선임하고 별도 전담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않아도 되나 동법 제 30조 4항에 의거 월 1회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 기술지도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기술지도 대상인 건설공사에서 유자격자를 전담안전관리자로 선임시 기술지도가 면제되는데 이경우 안전관리자 선임후 인건비를 안전관리비 처리가 가능한가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 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와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3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 중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 300인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당해 사업장에서 법제1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직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행하는 자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용방법·재해예방조치 등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의 지도를 받아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공사금액 3억원(「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는 1억원) 이상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미만인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행하는 자를 제외합니다.

- ① 공사기간이 3월 미만인 공사
- ②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지역(제주도를 제외한다)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 ④ 사업주가 영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를 선임하여 영 제1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직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 ⑤ 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공사

그러나, 귀 현장에서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담안전관리자 선임과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병행하는 경우 안전관리자 인건비 외에 기술지도 비용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기술지도를 병행하고자 하는 경우, 동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 또는 감리원 등과 사전에 그 필요성 등에 대하여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자 의무선임 공사는 아니라 하더라도 법상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하고 동 안전관리자가 공사기간에 대해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하여 수행한다면 선임신고 이후 근무기간 동안에 지급하는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